

[청구인] ○○○○○○○○○○○○○○○○○ ○○○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 ○○  
○ ○○○ ○○○ 소재 ‘○○○○○○○○○○○○○○○○’ (이하 ‘이 사건 요양기  
관’ 이라 한다)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  
지역본부(이하 ‘공단’ 이라 한다)가 2015. 6. 29. ~ 7. 2.(4일간) 이 사건 요양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① 주·  
야간보호기준 위반, ②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③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④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⑤ 야간·심  
야·공휴서비스 가산 위반 청구하는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  
시통지)’ 를 보냈으나 청구인은 ○○○○. ○○. ○○. 청문에 불출석하고 대  
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 ○○. ○○. 공단으로부터 ‘장  
기요양기관 청문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을 받은 후,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제4호 위반(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59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 규정대로 적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고, 이는 첨부서류(급여제공기록지, 이동서비스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나.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때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 관련 법령 및 산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구함.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증명서 등의 자료는 현지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지조사 당시 채증된 확인서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부당청구를 할 의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3조, 제32조, 제37조, 제6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 ○○○ ○○○ ○○○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2) 피청구인과 공단은 2015. 6. 29. ~ 7. 2.(4일간) 이 사건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 ○○.부터 ○○○○. ○○.까지(32개월간) ①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②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③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④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 기준 위반 청구, ⑤ 야간·심야·공휴서비스 가산 위반 청구하는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공단은 ○○○○. ○○. ○○.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현지조사 부당 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통보’ 를 하였다.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2)**

1. 장기요양기관현황

생략

2. 위반행위 내용

가. 부당청구액 : 주·야간보호 : 25,241,570원

나.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 주·야간보호기준 위반.....22,876,173원
-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수급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는 24시간 보호하면서 숙박을 제공한 날에도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1,157,480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제공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486,117원  
- 실제 제공한 시간보다 늘려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71,500원  
-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제공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야간·심야·공휴 서비스 가산위반청구.....650,260원  
- 휴일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제공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3. 행정처분 세부내용

○ 개정법('14. 2. 14. 시행) 적용 기관

기관명 (기관 기호)	급여 종류	조사대상 기간 (개월수)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부당 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 처분 (안)	과태료(안)			거짓청 구 (금액/ 비율)	위반횟 수(행 처분/ 과태 료)
								금 액	관 련 근 거	부 과 (안)		
○○○ ○○○ ○○○ ○○○	주간 보호	○○○○. ○○월~ ○○○○. ○○월 (32개월)	334,374,870	25,241,570	788,799	7.54	-	-	-	-	2,293,857/(0.68%)	-
위반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 59일	-	-	-	-	-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50만	법 제 69조 제1항 제3호	50만	-	-

4)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59일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행정 처분사전통지와 ○○○○. ○○. ○○.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5) 피청구인은 ○○○○. ○○. ○○. 공단에게 청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6) 청구인은 ○○○○. ○○. ○○. 환수 결정 내역에 승복할 수 없어서 이의신청 예정이니 청문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 ○○. ○○.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 불출석하였다.

7) 공단은 ○○○○. ○○. ○○. 피청구인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정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고,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는 각각 그 목적·주체·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처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청문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공문을 보냈다.

8)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재가급여 중 라목에서는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  
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 나목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2.개별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에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  
지를 규정하면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 이상 5% 미만 이면서 월평균 부당금  
액이 40만 원 이상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

고, 비고에서는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새로이 사실확인증명서 등 증거자료(이하 ‘청구인 제출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해 보건데, 기록에 나타난 피청구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 반면에,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청문이 실시됨을 안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마냥 청문에 불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하였을 뿐, 당시 예고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던바(당시 ‘청구인 제출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실시한 현지조사 당시 수집된 증거와 배치되는 청구인 제출의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결국,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근거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